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정 30312-2814 (전화 : 923- 7415)	시 행 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 5. 3. 1.	구 청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87. 10.		
보조기관 부청장		협조기관	문서통제
국장			접열 1987.10.24 통제관
과장			
기안책임자	도시정비계장	지적 1계장	발송인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발신명의	구 청 장
제 목	공람공고 및 의견청취		

제 1 안

수신 : 내부결재

제목 : 같은 건

1. 우리구 관내 안암제2어린이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.

제 2 안 (공고안)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원본대조필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지방행정기록자료

5-1

5-2

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 변경결정(일부 해제)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어린이공원의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 변경결정(일부 해제)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공람합니다.

공고심사	87.10.13	제 30 호
담당자	기획예산책장	기획감사과장

2. 공람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일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공람기간 : 87. 10. . - 87. . .

나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도시정비과

1987. 10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공람개요 (도시계획안)

구 분	도시계획안	위 치	규 모	비 고
어린이 공원	변경결정 (일부 해제)	안암동2가 140-3	일부 해제 624 M^2	기정 2138.8 M^2 변경 1514.8 "

제 3 안

수신 : 서울특별시장

참조 : 도시계획과장

8

제 목 : 같은 건
1. 우리구 관내 안암제2 어린이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어린
이공원)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
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기
보고합니다.
첨 부 : 1. 공고문 사본 1부
2. 도면 1부.
제 4 안
수신 : 서울특별시장
참조 : 공보관
제목 : 일간신문 및 시보 게재요청
1. 우리구 관내 안암제2 어린이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어린이
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일안사항에 대하여 일간신문 및 시보 게재 요청하오
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내 역 : 일간신문 2단 7 Cm.
첨 부 : 공고문 사본 4부. 끝.

원본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할 원본대조필 지방지원토목기사보

5-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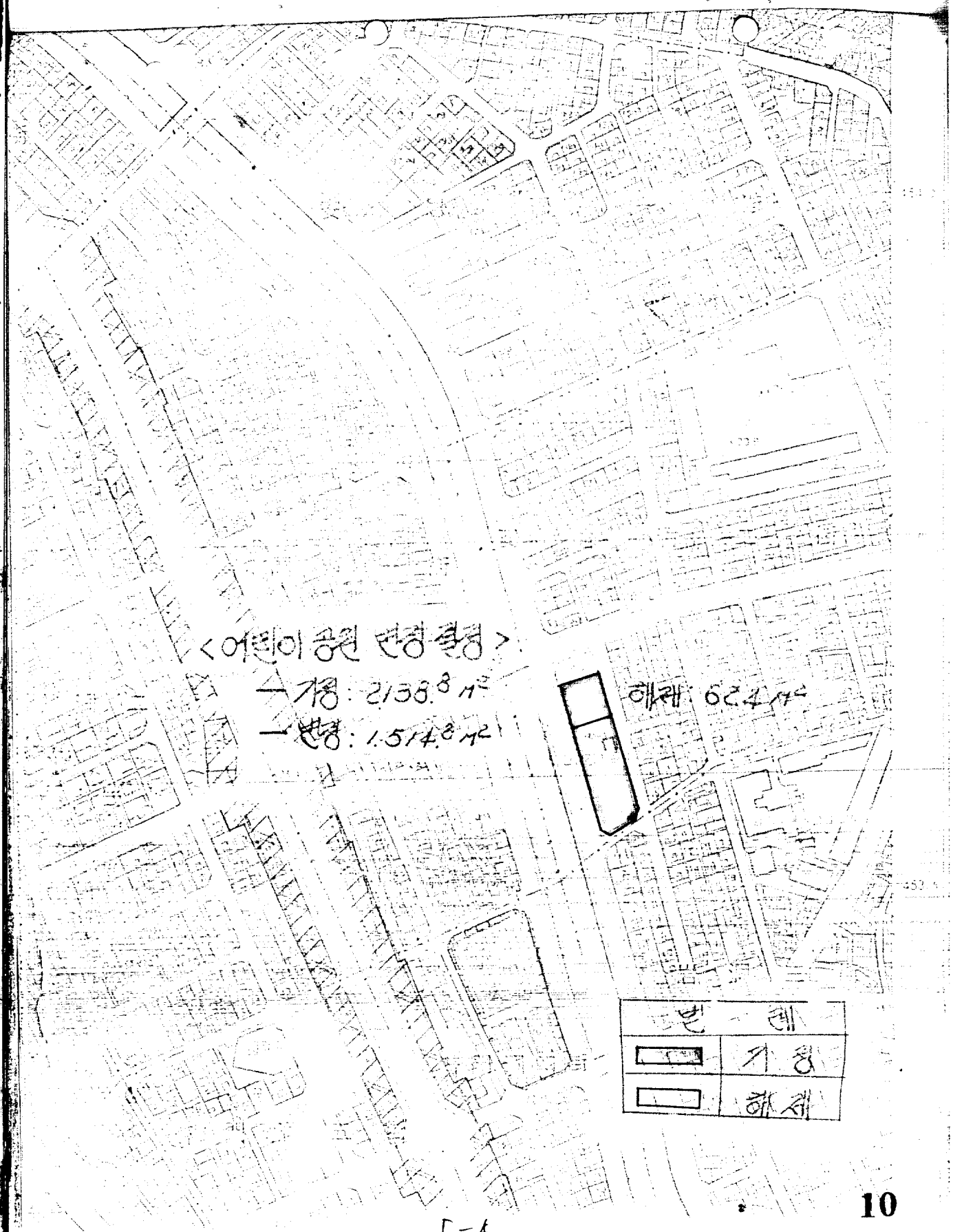

5-4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 변경결정 (일부 해제)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어린이공원의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 변경결정(일부 해제)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공람합니다.

2. 공람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일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공람기간 : 87. 10.. . - 87. . .

나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도시정비과

1987. 10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공 람 개 요(도시계획안)

구 분	도시계획안	위 치	규 모	비 고
어린이공원	변경결정 (일부 해제)	안암동2가 140- 3	일부 해제 624 ㎡	기정 2138.8㎡ 변경 1514.8㎡